

재해예방과 보험

박 무 일 / 우리 협회 교수
건설안전기술사

〈목 차〉

1. 개 요
2. 외국 보험기구의 재해예방활동
3. 국제사회보장협회
4. 국가별 보험분야의 재해예방활동
5. 결 론

아가 보험회사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경험이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에 대한 보수는 보험요율이 감소되어 피보험자측에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사정을 보면 이런 면에서 너무나 취약한 것 같다.

1. 개 요

선진산업사회에서 산재보험회사는 많은 금액을 산업재해예방에 사용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를 피보험자들의 재해 발생시 손해를 지불하고 보험회사의 경비로 쓰고 약간의 이윤을 남기면 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적정히 책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보험료 총액의 1~2%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종업원의 30~70%까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안전점검 또는 검사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보험회사가 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고객이 입는 손실을 적게 하고 나

2. 외국 보험기구의 재해예방활동

(1) 순수민영보험기구

미국과 영국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미국은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들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기구를 갖추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전 서비스 활동을 전개한다.

예방기관에서는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미국의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영국의 경우 재해보험협회(민영)에서 산재보험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재해보험협회는 업종별 사용자 상호보험협회들로 구성하고 있다.

보험협회내에 산재예방부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안전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안전감독원(정부 인정)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전지도를 담당하고, 안전교육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정검을 실시한다.

(2) 법률로서 보장된 민간기구

독일 산재보험조합(B.G)과 오스트리아의 총합재해보험협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피보험자에 대한 예방사업과 보상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며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민간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법률의 보호를 받는 준국가단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나 이태리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처럼 강력한 권한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금고에서 산재보험을 관장하며 보험료 중의 일부를 법적 공제하여 예방단체의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정부에 의한 보험기구

일본과 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은 노동성, 한국은 노동부 산하의 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업무를 관장한다.

일본에서는 산특회계에서 많은 재원을 예방단체의 예방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전 서비스 활동을 극소하다.

3.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의 활동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각국의 사회보장

및 상호부조계획을 관장하는 국제적 단체로서 ISSA를 구성하는 각 국의 기관은

- ① 산재보험기관
- ② 질병 또는 출산보험기관
- ③ 노령, 폐질 또는 유족보험기관
- ④ 실업보험기관 등이다.

ISSA의 목적은 국제적 레벨에 있어 사회보장의 보호,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ISSA는 산업재해의 예방이 사회보장(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안정을 도모하는 첩경으로 보고 이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ISSA의 산재예방 활동은 국제부(Internatioanl Section)에서 실시하며, 여기에는 다음 부서 등이 있다.

- ① 농업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위원회
- ② 건설업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위원회
- ③ 전기재해 방지에 관한 위원회
- ④ 화학공업에 있어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위원회
- ⑤ 광업에 있어서 재해예방에 관한 위원회
- ⑥ 산재의 예방에 관한 연구를 위한 위원회
- ⑦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홍보를 위한 위원회
- ⑧ 기계의 방호에 관한 위원회
- ⑨ 철강업 및 금속공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

ISSA에서는 이러한 위원회를 통하여 안전보건기준 제정, 기술연구, 제도개발 등을 추진하고 각국에 이의 시행을 권장한다.

4. 국가별 보험분야의 재해예방활동

(1) 미국

미국의 산재보상보험은 각 주의 주정부가 관장하는 것 외에 민간의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회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자가보험(自家保險)의 3종류가 있으며 이 중 민간 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의 비중이 가장 크다.

보험회사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낮추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의 원인인 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별도의 산재예방기구를 설치하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인리히(H. W. Heinrich)도 「하드포드」에 있는 보험회사의 산재예방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보험회사의 안전전문가는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 산재예방에 대하여 진단하고, 필요한 조언을 한다. 새로 설치된 시설물, 플랜트(plant) 및 설비에 대한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또 발생된 재해의 원인 조사도 하여 예방대책을 세운다.

보일러, 승강기, 압력용기 등에 대한 검사도 보험회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이때문에 여러가지 검사기기가 확보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 생산기술의 진보에 대응한 올바른 지도를 하도록 연구소를 병설하거나 직업병 대책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설치한 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y : U. L)에서는 전기기기, 방재시설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행하고 큰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위험분산의 의미가 적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체 자체적으로 보험기관을 설치하고 기업내

외의 보험업무를 관장한다. 이를 자가보험이라 하며, 이 경우에 보험이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사업주측에서 볼 때, 산업재해로 지출되는 보상금의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적으로 자가보험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연구소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보험제도는 기업의 자율안전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안전보건행정은 노동법에 의거한 감독행정과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지도행정의 2가지로 되어 있다. 전자는 노동부와 그 관할하에 있는 지방조직을 통해 일원적인 근로감독의 형으로 이루어지고, 후자는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질병보험금고(전국 금고와 지방금)의 조직을 통해 안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행정을 질병보험금고가 중심으로 되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병보험금고는 전국 질병보험금고 아래에 20개의 지방 질병보험금고와 122개의 초급 질병보험금고가 설치되어 있다.

어느 것이든 이사회는 피보험자 9명, 사업주 9명, 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질병보험금고 및 지방 질병보험금고에는 산업별로 기술위원회가 설치되고 여기서 산재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

질병보험금고가 수행하고 있는 산재예방의 큰 역할은 역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전 서비스 활동이다.

지방 질병보험금고에서는 안전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리더로 하고, 기술 컨설턴트와 안전

지도원을 그 밑에 배치하여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기술 컨설턴트와 안전지도원은 사업장을 순회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지만 근로감독관같이 법령위반을 적발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에 비하여 기술 컨설턴트와 안전지도원은 그 수가 매우 많고(기술 컨설턴트는 약 무어의 2배, 안전지도원은 약 4배) 그 부과된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한편 전국 질병보험금고의 산재예방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해 1968년 프랑스 안전협회가 창설되었고 이 단체는 사회보장장관의 감독하에 두고 있으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경비의 95%가 산재예방기금으로부터 보조(보조금은 연간 약 1억 프랑)된다.

파리에 본부(직원 474명)가 있고 지방조직은 없다. 파리에 센터(직원 70명)가 있고 난시에 연구소(직원 320명)가 있다.

사업은 관계 관청, 질병보험금고 및 일반사업장(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기술지도와 자료수집 및 제공, 질병보험금고의 기술 컨설턴트와 안전지도원에 대한 연수, 양성 및 조사·연구 업무 등이다.

(3) 독일

독일은 영업법, 국가보험법, 산업안전법 등 3법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다스리고 있다.

국가보험법은 종래 독립되어 있던 각종 산재보험법(일반 산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선원재해보험법)을 하나의 법으로 집대성시킨 것으로,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재 발생시 피재자에 대한 요양 및 피재자와 피재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요양 후의 재활”의 3가지를 목적으로 하며, 그 관장기구인 업종별 산재보험조합(Berufs genossenschaft : B.G)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조합(B.G)은 보험가입자(사업주)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라 할 수 있으나 국가보험법에 의해 설치·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기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조합은 산업별로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 지역별이 가미된 것이다. 전국적인 연합의회로서 전국산재보험조합이 「본」에 설치되어 있다.

산재보험조합의 주임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예방재활(rehabilitation), 산재보상의 3가지이며, 이들 업무의 운영은 연방정부(주 단위의 것은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업무의 운영은 모든 안전이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총회에서 결정되며, 이사회는 노사 동수의 이사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산하에 기술검사협회(TÜV)를 두고 압력용기, 보일러, 승강기 등의 성능검사 등을 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조합(B.G)의 예방사업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 및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산재예방규정을 정하고 적용한다. 이 산재예방규정은 국가의 법규에 준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영업감독관도 사업장 감독시에 이 규정을 활용한다. 또 국가보험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조합의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조합(B.G)에서는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기술감독원(정부인정)을 두고, 사업장의 산재방지규정 이행을 감독 지도케 한다.

즉, 기술감독원은 산재방지규정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설비나 작업환경의 안전화를 도모하고 직업병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와 관리자를 지도하고 또 각종 자료 요구, 샘플 채취 및 위험설비의 사용정지 권한을 갖는다.

(4)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사업을 노동성에서 관장한다.

산재보험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예방활동은 없고, 다만 예방단체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 보험료 중의 일부(산특회계)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전 서비스 활동을 간접적으로 실시한다.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서는 이 지원금을 다시 산하의 업종별 5개 노동재해방지단체(건설, 육상운송, 항만하역, 광산, 선박)에 분배하여 활용한다.

이상 각국의 유형을 요약하면,

1) 예방기구의 유형

① 미국에서는 민간의 보험회사에서, 영국에서는 민영의 보험협회에서 보험사업을 관장하며, 산하에 산재예방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② 독일에서는 국가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조합(B.G)을 설치하고, B.G에서 보험사업과 동시에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B.G는 준국가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강력한 대사업장 안전보전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③ 프랑스에서는 질병보험금고에서 보험사업과 예방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금

고의 산재예방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프랑스 안전협회를 창설, 대부분의 경비를 보조하여 조사연구,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질병보험금고의 대사업장 예방활동을 돕게 한다.

④ 일본에서는 노동성에서 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예방단체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에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사업장 안전 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구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2) 예방활동 형태

① 미국, 영국에서는 민간의 보험회사나 민영 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안전 서비스 활동을 하며, 독일에서도 산재보험조합을 통하여 직접적인 대사업장 예방활동을 서비스한다.

② 프랑스나 이태리 등의 경우는 산재보험료 중 일부를 예방단체에 지원하여 예방단체로 하여금 안전 서비스 활동을 하게 한다.

- 프랑스 안전협회는 질병보험금고에서 경비의 95% 지원

- 이태리의 산재방지협회는 산재보험기금에서 45% 지급

- 일본 및 캐나다의 재해방지협회 역시 일부 보조

이중 일부를 지원하여 대사업장 안전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서구지역에 비해 극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3)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전 서비스

① 직접 서비스

미국에서는 민간의 보험회사에서, 영국에서는

민영의 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자의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안전 서비스 활동을 한다.

독일에서는 산재보험조합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종합재해보험협회에서 보험기금으로 대사업장에 대한 안전 서비스를 직접 실시한다.

② 간접 서비스

프랑스나 일본 등에서는 산재보험관장기구에 서 보험료 중의 일부를 예방단체에 지원하여 예방단체를 통하여 대사업장 안전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4) 예방재원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 중 2%를 법적 공제하여 예방활동을 지원하며, 미국의 보험회사의 경우 5%로 안전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보험료의 2~5%선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예방재원은 전체 보험 징수액의 5%선으로 하고 있다.

5. 결 론

산업재해방지론 초판은 보험회사의 사원이었던 “하인리히”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이 저서 출판 이전의 보험회사의 재해예방활동은 피보험자의 시설의 검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사고는 불안전상태와 불안전행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는 개념이 정립되면서 보험회사는 개인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끔 지도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재해예방담당자 및 안전전문가는 근로자재해보상 이외에 안전문제, 즉 소음, 보

일러, 승강기, 화재, 고속도로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도자가 되어 왔다.

보험회사의 재해예방담당자는 보험업무담당자를 위한 검사원 및 안전 컨설턴트라는 이중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모두 중요한 기능인 것은 틀림없다.

보험은 경쟁이 극심한 산업으로서 타사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우위에 서게 된다. 강력한 안전 및 재해예방을 갖는 보험회사는 이윤 목표달성의 면에서도 유리하다. 손해의 경감은 장기적으로 증대 보험요율의 인하로 되나 단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이윤의 증대로 된다.

보험회사는 안전 및 재해예방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다 해 왔지만 반드시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역할은 주로 규모가 큰 피보험자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들은 전속의 안전지도자 및 스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다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소액의 보험료만 받아 들이고 있어 어느 정도 서비스해야 할 것인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할 증보험료를 징수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보험회사는 자사에 방재 및 안전의 컨설턴트 회사를 설립하여 안전서비스는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의 실정은 요원한 것 같다. 활성적인 재해예방 활동은 보험이 직접 참여할 때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